

	NCS기반 교육품질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번호	3-3-26	
		제정일자	2016.2.19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0	총페이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 NCS기반 교육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과NCS평가위원회) ① 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과는 학과NCS평가위원회(이하 “학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과평가위원회는 학과장 및 NCS 전담교수를 포함하여 학과의 전임교원의 과반과 2인 이상의 산업체 현장 전문가 또는 NCS 교육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운영, 성과 및 고객만족도에 대한 학과 자체평가 수행
2. 학과의 NCS기반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
3. NCS기반 교육과정 학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④ 학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대학NCS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NCS자체평가위원회(이하“대학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평가위원회는 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처장, 교무부처장, 산학협력부처장, 기획부처장, NCS교육운영지원센터장으로 구성하며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 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위원의 경우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학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학과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2.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 자체평가 수행
3. 대학 NCS기반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 도출
4. NCS기반 교육과정 대학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이하 “대학자체평가보고서”라 한다) 작성

⑤ 대학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대학평가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학과자체평가보고서) ① 학과의 장은 매 학년도 2학기의 성적처리종료 후 15일 이내에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학과자체평가보고서를 대학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①항의 학과자체평가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규정 준수여부 평가 및 그 개선방안
2.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적절성, 기자재 및 도구의 적절성 평가 및 그 개선방안
3.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및 직무능력성취도 등의 교육성과 평가 및 그 개선방안
4.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 및 강의평가의 실시 및 교육과정개선 반영 여부 평가 및 그 개선방안
5. 기타 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5조(대학자체평가) ① 대학평가위원회의 장은 매 학년도 2학기의 성적처리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학의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대학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대학자체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각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대학의 학사정책 및 규정 준수여부를 평가한 후 그 개선방안 도출
2.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적절성, 기자재 및 도구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그 개선방안 도출
3.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및 직무능력성취도 등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후 그 개선방안 도출
4.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 및 강의평가에 대한 학과의 평가와 그 결과의 교육과정 개선 반영 여부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 도출
5. 기타 대학의 NCS 기반 교육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③ 대학평가위원회는 대학자체평가의 결과를 담은 대학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과 및 부서에 배포한다.

제6조(교육품질개선계획) ① 학과 및 부서의 장은 대학자체평가보고서에 따라 교육품질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품질개선계획은 대학평가위원회의 대학자체평가보고서 배포 후 15일 이내에 학과 및 부서의 해당 업무에 대해 작성하며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 한다